

##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

의안  
번호 2004 -

제안연월일 : 2004. 7. .  
제안자 : 신주범 의원 외 인

### 제정이유

거창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군정의 연구 등 의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 주요골자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군정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일 상임위원회소속 의원만이 아닌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규정함(안 제2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조).

의원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군정의 연구 등 의회의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군정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일 상임위원회소속 의원만이 아닌 7명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 3 조 (연구단체지원 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제 4 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 연구단체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연구단체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여 이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년도 연구활동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의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기간동안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중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결과는 "정책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 10 조 (규정등 제정)** 이 규칙외에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칙은 본회의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년 월 일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1. 단 체 명 :
2. 대 표 자 :
3. 설립목적 :
4. 구성인원 :

성 명	소속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의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연구단체 의원변동신고서

년 월 일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실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변동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타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의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연구 활동 계획서

년 월 일

본 연구단체의 ○ ○ ○ ○년도 연구활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방법및 세부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액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기타			

제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통지서

년 월 일

거창군의회연구단체지원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귀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사·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연구활동비 지급	지급액	원
	지급방법	
기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인)

거창군의회회장 귀하